

# [연말정산 도움자료]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

## <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 요약 >

### □ 주요 내용

- 세법이 개정되거나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상담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 설명하고 항목별로 다양한 계산 사례를 제공

### □ 주요 항목

(건수)

합 계	비과세	인적 공제	신용카드 소득공제	자녀 세액공제	연금계좌 세액공제	특별세액공제				월세액 세액공제
						보험료	의료비	교육비	기부금	
30	4	3	2	3	2	7	1	3	3	

- ① (비과세 근로소득) 비과세 근로소득을 요약 설명하고 비과세 대상 금액 계산 과정과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계산 사례
- ② (인적공제)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건을 표 형식으로 제공하고, 소득 발생 사례별 기본공제 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
- ③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) 복잡한 소득공제 계산방법을 사용금액·결제수단별 다양한 계산사례를 제시하여 설명
- ④ (자녀세액공제) 자녀 수에 따른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출산·입양 공제대상 자녀별 공제금액 사례
- ⑤ (연금계좌세액공제)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가 단순화 되었고, 나이요건이 삭제되어 2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공제금액 산정 방법 설명
- ⑥ (특별세액공제) ㉠ 보험료, ㉡ 의료비(산후조리원 비용, 실손보험금 수령액 포함사례), ㉢ 교육비, ㉣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계산방법 설명
- ⑦ (월세액 세액공제) 총급여별·임차주택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

---

# 「2023년 귀속 연말정산」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 사례

---

2024. 1.



법인납세국 원천세과

# 순서

1. 비과세 근로소득 .....	1
2. 인적공제(기본공제와 추가공제) .....	3
3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.....	5
4. 자녀 세액공제 .....	8
5. 연금계좌 세액공제 .....	9
6. 특별 세액공제 .....	11
① 보험료 세액공제 .....	11
② 의료비 세액공제 .....	12
③ 교육비 세액공제 .....	15
④ 기부금 세액공제 .....	16
7. 월세액 세액공제 .....	18

# 1. 비과세 근로소득

-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
- 사회정책적 입장이나 과세기술풀요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의미
  - 실비변상적 급여(월 20만 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)
  - 국외근로소득(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)
  -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(연 240만 원 이내)
  -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
  -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(월 10만 원 이내)
  -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
  - 연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

<b>사례 1</b>	매월 급식수당으로 25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?
◇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20만 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	
☞ 위 근로자의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20만 원입니다.	

<b>사례 2</b>	두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A회사 30만 원, B회사 15만 원을 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금액은?
◇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비과세 적용	
☞ 위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금액은 35만 원입니다.(A회사 20만원, B회사 15만 원)	

<b>사례 3</b>	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은? 1월 ~ 3월 : 월 270만 원,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월 ~ 6월 : 월 350만 원 7월 ~ 9월 : 월 390만 원,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0월 ~ 12월 : 월 240만 원
◇ 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3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적용하지 않음	
◇ (1월~3월 : 270만 원 × 3) + (4월~9월 : 300만 원 × 6) + (10월~12월 : 240만 원 × 3)	
☞ 위 근로자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은 3,330만 원입니다.	

생산직근로자의 12월 급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월정액급여 및 비과세 금액은? (1~11월까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금액 200만 원을 공제 받음)

**사례 4**

- ① 기본급 140만 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야간근로수당 10만 원
- ② 가족수당(매월 지급) 6만 원        ⑥ 휴일근로수당 5만 원
- ③ 부정기적 상여 100만 원            ⑦ 식대(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) 23만 원
- ④ 연장근로수당 10만 원

☞ 비과세 금액 : 45만 원

※ ④ 연장근로수당 10만 원, ⑤ 야간근로수당 10만 원, ⑥ 휴일근로수당 5만 원, ⑦ 식대 20만 원

☞ 월정액급여 : 169만 원

<월정액급여 계산>

☞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: 194만 원

\* ① ~ ⑦ 총 합계액 294만 원 - 100만 원(③ 상여) = 194만 원

\*\* ⑦ 식대(23만 원)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 급여 계산 시 포함됨

◇ 연장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: 25만 원

월정액급여 =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- 야간근로수당 등  
= 194만 원 - 25만 원 = 169만 원

☞ 위 근로자의 12월 비과세 금액은 45만 원 이고 월정액 급여는 169만 원 입니다.

※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

-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

<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적용방법>

월정액급여 = 급여의 총액 - 야간근로 수당 등

- ① 급여의 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·급료·보수·임금·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(다만,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제외)
-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
-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 
※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
- ④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에 포함
-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 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

## 2. 인적공제(기본공제와 추가공제)

- 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
- 거주자 본인,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종류가 있음
  - 기본공제 : 근로자 본인,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)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

### <기본공제 요건>

부양가족	직계존속	직계비속	형제자매	위탁아동	수급자
나이요건	60세 이상 ('63.12.31.이전)	20세 이하 ('03.1.1.이후)	20세 이하 60세 이상	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	제한없음

- 추가공제 :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
### <추가공제 요건>

요건	경로우대 (70세 이상)	장애인	부녀자 (부양/기혼)	한부모*
공제금액	100만 원	200만 원	50만 원	100만 원

\*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(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)

사례 1	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, 자녀 3명(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),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,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?
◇ 공제대상 가족수 : 본인, 배우자, 자녀 3명, 직계존속 2명	
☞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,050만 원 입니다. [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(7명) × 150만 원]	
※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	

**사례 2**     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?

◇ 장애인은 소득요건(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와 장애인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 원, 추가공제 금액은 200만 원 입니다.

**사례 3**      근로자의 부양가족별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기본공제대상자 수는 ?

- 본인 총급여액 5,000만 원      · 배우자 총급여액 500만 원
- 만 20세 장녀 사업소득금액 110만 원
- 만 18세 장남 이자수입 100만 원
- 만 60세 부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500만 원

◇ 기본공제대상자 본인, 배우자, 만 18세 장남, 만 60세 부친

☞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4명입니다. [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(4명)×150만 원]

\* 수입금액 10억 이하인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사업소득 (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)

**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초과 사례**

- (근로소득)**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(비과세 제외) 5백만원,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(비과세소득제외) 3,333,334원 초과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 - 총급여 333만원 -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= 근로소득금액 100만원
- (사업소득)**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 - 총수입금액 1,000만원 - 필요경비 900만원 = 사업소득금액 100만원
- (기타소득)**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, 기본공제 불가능
  - 총수입금액 1,500만원 - 필요경비 1,200만원 = 기타소득금액 300만원
  - ※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(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)
- (연금소득)**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(비과세소득 제외)이 연 5,166,666원(연금소득금액 100만원) 초과하거나, 사적연금소득(연금저축·퇴직연금 등)의 총 연금액이 연 1,200만원 초과(종합소득 합산과세 선택)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 - ※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
- (금융소득)** 이자·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 - ※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,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(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)
- (양도소득)**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 - 양도차익(=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) 200만원 -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= 양도소득금액 100만원(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)
- (퇴직소득)**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 - 퇴직급여액(비과세소득 제외) 100만원 = 퇴직소득금액 100만원
  - ※ 공적연금 관련법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)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

### 3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
#### □ 사용처별·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

결제수단 및 사용처별	공 제 율
◇ 신용카드	15%
◇ 직불·선불카드·현금영수증	30%
◇ 도서·공연·영화·박물관·미술관 (’23.4.1. ~ 12.31. 대중교통 사용분) *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	30% (40%)
◇ 전통시장 사용분 (’23.4.1. ~ 12.31. 전통시장 사용분)	40% (50%)
◇ 대중교통 사용분	80%

※ 영화관람료는 2023.7.1.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

#### □ 공제한도 및 최저 사용금액

##### ○ (공제한도) 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

구 분	공 제 한 도
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	300만원
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	250만원

##### ○ (추가 공제한도)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 원 한도 추가

항 목	추가공제 한도	
	7천만원 이하자	7천만원 초과자
전통시장	300만원	200만원
대중교통		
도서·공연·영화·박물관·미술관		

##### ○ (최저 사용금액)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

※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비율을 곱하여 공제금액을 계산



**사례 1**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(총급여의 25%) 이상

◇ 총급여 68백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?  
 ▷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 원입니다.

※ 「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」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.

[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]

구 분	사 용 액
신용카드	2,500만원 (대중교통 300만원 포함)
현금영수증	1,300만원 (전통시장 400만원* 포함)
체크카드	800만원 (도서공연 200만원** 포함)
<b>총 계</b>	<b>4,600만원</b>

- 1) 전통시장 사용액 중 '23년 1월~3월 사용금액은 120만원, 4월~12월 사용금액은 280만원
- 2) 도서·공연 사용액 중 '23년 1월~3월 사용금액은 50만원, 4월~12월 사용금액은 150만원

[소득공제금액 계산]

◇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4,6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(총급여의 25%) = 6,800만 원 × 25% = 1,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 
 ◇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: 600만 원 (1 + 2)

1. 기본공제 금액

- : ① + ② + ③ + ④ + ⑤ - ⑥ = 1,028만원(한도 300만원)
- ① 전통시장 사용분 = (120만원 × 40%) + (280만원 × 50%) = 188만원
- ② 대중교통 사용분 = 300만원 × 80% = 240만원
- ③ 도서·공연 등 사용분 = (50만원 × 30%) + (150만원 × 40%) = 75만원
- ④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 등 사용분(전통시장·대중교통 이용분 제외)  
 = (1,300만원-400만원) × 30% + (800만원-200만원) × 30% = 450만원
- ⑤ 신용카드사용분 = (2,500만원-300만원) × 15% = 330만원
- ⑥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(신용카드 사용금액 ≥ 최저사용금액 인 경우)  
 = 최저사용금액(1,700만원) × 15% = 255만원

2.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= 300만 원\*

\* Min{한도초과액(1,028만 원 - 300만 원), (188만원 + 240만원 + 75만원), 300만원}  
 = 300만원

\*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

**사례 2**

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(총급여의 25%) 이상

◇ 총급여 9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?

▷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1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0만 원입니다.

※ 「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」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.

**[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]**

구 분	사 용 액
신용카드	3,100만원 (대중교통 200만원 포함)
현금영수증	1,800만원 (전통시장 350만원 <sup>1)</sup> 포함)
체크카드	900만원 (도서공연 270만원 <sup>2)</sup> 포함)
<b>총 계</b>	<b>5,800만원</b>

1) 전통시장 사용액 중 '23년 1월~3월 사용금액은 90만원, 4월~12월 사용금액은 260만원

2) 도서·공연 사용액 중 '23년 1월~3월 사용금액은 70만원, 4월~12월 사용금액은 200만원

**[소득공제금액 계산]**

◇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5,8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(총급여의 25%) = 9,000만 원 × 25% = 2,2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

◇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: 450만 원 (1 + 2)

1. 기본공제 금액

: ① + ② + ③ + ④ - ⑤ = 1,212.5만원(한도 250만원)

① 전통시장 사용분 = (90만원 × 40%) + (260만원 × 50%) = 166만원

② 대중교통 사용분 = 200만원 × 80% = 160만원

③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 등 사용분(전통시장·대중교통 이용분 제외)  
= (1,800만원-350만원) × 30% + (1,450만원-270만원) × 30% = 789만원

④ 신용카드사용분 = (3,100만원-200만원) × 15% = 435만원

⑤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(신용카드 사용금액 ≥ 최저사용금액 인 경우)  
= 최저사용금액(2,250만원) × 15% = 337.5만원

2.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= 200만 원\*

\* Min{한도초과액(1,212.5만 원 - 300만 원), (188만원 + 160만원), 200만원} = 200만원

\*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 한도 200만원 적용

## 4. 자녀 세액공제

### □ 기본공제대상 자녀

-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
자녀의 수	세액공제금액
1명	연 15만 원
2명	연 30만 원
3명 이상	연 30만 원 +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

\* 3명 : 60만 원, 4명 : 90만 원, 5명 : 120만 원

### □ 출산·입양 공제대상 자녀

-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, 둘째 50만 원,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
\*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(기본공제, 출산·입양 공제)와 중복적용 배제

<b>사례 1</b>	3자녀(22세, 10세, 3세)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?
◇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을 공제합니다.	
☞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15만 원입니다. * 22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아님	
<b>사례 2</b>	4자녀(5세, 8세, 10세, 13세)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?
◇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이 3명이므로, ☞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60만 원입니다.	
<b>사례 3</b>	1자녀(5세)가 있는 사람이 2023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?
◇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없으나 둘째 자녀가 출산 공제대상이므로 ☞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50만 원입니다.	

## 5. 연금계좌 세액공제

### □ 연금계좌 세액공제

-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
-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
-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

#### <총급여액별 공제비율>

총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	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(퇴직연금 합산시 한도)	공제율
55백만원 이하 (45백만원 이하)	600만원 (900만원)	15%
55백만원 초과 (45백만원 초과)		12%

-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: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 적용(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는 연 600만원)
  - 연금저축계좌 :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“연금저축”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
  - 퇴직연금계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형)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RP), 중소기업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(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)

**사례 1**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은? (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)

(단위 : 만원)

상 황	연금저축납입액 (600만 원 한도)	퇴직연금 납입액	공제금액 (900만 원 한도)	공제비율	세액공제액
1	0	700	700	15%	105
2	200	500	700	15%	105
3	500	200	700	15%	105
4	700	0	600	15%	90

**사례 2**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은? (총급여 5천 5백만 원 초과)

(단위 : 만원)

상 황	연금저축납입액 (600만 원 한도)	퇴직연금 납입액	공제금액 (900만 원 한도)	공제비율	세액공제액
1	0	700	700	12%	84
2	200	500	700	12%	84
3	600	350	900	12%	108
4	700	0	600	12%	72

## 6. 특별 세액공제

### ① 보험료 세액공제

-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
<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>

구 분	공 제 항 목	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	세액공제율
보장성보험	생명보험,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	연 100만 원	12%
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	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	연 100만 원	15%

#### 사례 1

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종합보험(피보험자 본인)의 보험료 납입영수증(보험료 110만 원)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?

◇ 세액공제 대상금액 : 100만 원(한도 100만 원)

◇ 보험료 세액공제액 : 100만 원 × 12% = 12만 원

☞ 위 근로자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12만 원 입니다.

#### 사례 2

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A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20만 원과 자녀 B(장애인)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이 200만 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?

◇ 세액공제 대상금액 : 200만 원 = 100만 원 (일반보장성보험) + 100만 원(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 원)

◇ 보험료 세액공제액 : (100만 원 × 12%) + (100만 원 × 15%) = 27만 원

☞ 위 근로자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27만 원 입니다.

## ② 의료비 세액공제

-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  -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

### <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>

구 분	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	세액공제율
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	연 700만 원 한도	15%
본인·65세이상·장애인 의료비	한도 없음	15%
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	한도 없음	20%
난임시술비	한도 없음	30%

※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: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

<b>사례 1</b>	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 110만 원, ② 미숙아 자녀를 위하여 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?
<p>◇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%(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%, 난임시술비 30%)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.</p> <p>◇ 총급여액의 3% 해당금액 : 180만 원(총급여액의 3% = 6천만 원 × 3%)</p> <p>◇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: 130만 원 (310만원 - 180만원)</p> <p>의료비 총 사용액 : 310만원 (미숙아 2백만원+ 부양가족 110만원)</p> <p>공제불가 금액 = 총급여의 3% = 180만원(부양가족 110만원 + 미숙아 70만원)</p> <p>☞ <b>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은 130만원입니다.</b></p>	

<b>사례 2</b>	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본인 등 의료비 1천만 원,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?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총급여액의 3% 해당금액 : 120만 원(총급여액의 3% = 4천만 원 × 3%)</li> <li>◇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 대상 : 100만 원 - 120만 원 = △ 20 만원</li> <li>◇ 본인 등 의료비 공제 대상 : 980만 원(1천만 원 - 20만 원)</li> <li>◇ 의료비 세액공제액 : 147만 원(980만 원 × 15%)</li> </ul> <p>☞ 위 근로자의 <b>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47만 원</b> 입니다.</p>	

<b>사례 3</b>	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본인 등 의료비 1천만 원,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? (당해연도 실손의료보험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,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(1,100만 원)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(200만 원)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합니다.</li> <li>◇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: 900만 원(본인 등 의료비)</li> <li>◇ 총급여액의 3% 해당금액 : 120만 원(총급여액 4천만 원 × 3%)</li> <li>◇ 본인 등 의료비 공제 대상 : 780만 원(900만 원 - 120만 원)</li> <li>◇ 의료비 세액공제액 : 117만 원(780만 원 × 15%)</li> </ul> <p>☞ 위 근로자의 <b>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17만 원</b> 입니다.</p>	

<b>사례 4</b>	총급여액 5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?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%(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%, 난임시술비 30%)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.</li> <li>◇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.</li> <li>◇ 총급여액의 3% = 50,000,000 × 3% = 1,500,000원</li> <li>◇ 공제대상 의료비 = 2,000,000원 (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)</li> <li>◇ 세액공제 대상금액 = 2,000,000원 - 1,500,000원 = 500,000원</li> </ul> <p>☞ 위 근로자의 <b>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500,000원 × 15% = 75,000원</b>입니다.</p>	



<b>사례 6</b>	총급여액 6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난임시술비 400만원,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고, 병원 치료비로 35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?								
<p>◇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%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%(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%, 난임시술비 30%)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.</p> <p>◇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.</p> <p>◇ 총급여액의 3% = 60,000,000 × 3% = 1,800,000원</p> <p>◇ 공제대상 의료비 =</p> <table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난임시술비</td> <td>4,000,000원 (전액 공제대상)</td> </tr> <tr> <td>산후조리원 비용</td> <td>2,000,000원 (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)</td> </tr> <tr> <td>기타 의료비</td> <td>3,5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합계</td> <td>9,500,000원</td> </tr> </table> <p>◇ 세액공제 대상금액 = 4,000,000원 + [(2,000,000+3,500,000) - 1,800,000] = 7,700,000원</p> <p>☞ 위 근로자의 <b>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,755,000원</b>입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난임시술비 4백만원 × 30% + 일반 의료비(산후조리원 포함) 370만원 × 15% = <b>1,755,000</b></p>		난임시술비	4,000,000원 (전액 공제대상)	산후조리원 비용	2,000,000원 (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)	기타 의료비	3,500,000원	합계	9,500,000원
난임시술비	4,000,000원 (전액 공제대상)								
산후조리원 비용	2,000,000원 (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)								
기타 의료비	3,500,000원								
합계	9,500,000원								

<b>사례 7</b>	총급여액 8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, 병원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?						
<p>◇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%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%(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%, 난임시술비 30%)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.</p> <p>◇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.</p> <p>◇ 총급여액의 3% = 80,000,000 × 3% = 2,400,000원</p> <p>◇ 공제대상 의료비 =</p> <table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산후조리원 비용</td> <td>0원 (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의료비로 인정받습니다.)</td> </tr> <tr> <td>기타 의료비</td> <td>3,0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합계</td> <td>3,000,000원</td> </tr> </table> <p>◇ 세액공제 대상금액 = 3,000,000원 - 2,400,000원 = 600,000원</p> <p>☞ 위 근로자의 <b>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600,000원 × 15% = 90,000원</b>입니다.</p>		산후조리원 비용	0원 (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의료비로 인정받습니다.)	기타 의료비	3,000,000원	합계	3,000,000원
산후조리원 비용	0원 (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의료비로 인정받습니다.)						
기타 의료비	3,000,000원						
합계	3,000,000원						

### ③ 교육비 세액공제

-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, 기본공제대상자(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)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
#### <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>

구 분	세액공제 대상금액
근로자 본인	전 액
기본공제대상자(나이 제한 받지 않음)인 배우자·직계비속·형제자매 및 입양자 ※ 직계존속은 제외	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, 초·중·고등학생 ⇒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② 대학생 ⇒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③ 대학원생 ⇒ 공제대상 아님
장애인 특수교육비 (직계존속 포함)	전 액

**사례 1**      근로자가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(소득 없음)를 위해 아래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연도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?

구 분	내 용	금 액
본 인	대학원 (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)	교육비 800만 원
자 녀	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(1명)	보육료 150만 원
	초등학생(1명)	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 원
	중학생(1명)	중학교 수업료 300만 원
형제자매 (3명)	대학원생(처남, 26세)	1,000만 원
	대학생(처남, 22세)	900만 원
	대학생(동생, 25세)	750만 원

◇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(①+②+③) = 800만 원 + 450만 원 + 1,650만 원 = 2,900만 원

① 본인교육비 : 800만 원

② 자녀 교육비 : 450만 원(150만 원+300만 원)  
\* 취학전 자녀의 영유아 보육료 150만 원은 공제 대상이나, 초등학생의 학원·체육 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

③ 형제자매 교육비 : 1,650만 원  
\* 대학생 처남(공제한도 900만 원), 동생 750만 원 공제가능하나 대학원생 처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

☞ 위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4,350,000원입니다.  
\*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= 2,900만 원 × 15% = 435만 원

#### ④ 기부금 세액공제

-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,
  - 기부금액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
\* '21년 ~ '22년 기부분은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%p 상향 적용

#### <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>

구 분		공 제 항 목	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	공제율
정치자금 기부금		정당기부 등	근로소득금액 전액	10만원 이하 (100/110) 10만원 초과 (15%) 3천만원 초과 (25%)
고향사랑 기부금		지방자치단체 등	500만원	10만원 이하 (100/110) 10만원 초과 (15%)
특례기부금		국방헌금, 위문금품 등	근로소득금액 전액	특례+우리사주 +일반 1천만원 이하 15% 1천만원 초과 30%
우리사주조합기부금		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	근로소득금액의 30%	
일 반 기부금	종교단체 외	지정된 사회·복지·문화·예술단체	근로소득금액의 30%	
	종교단체	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	근로소득금액의 10%	

\* 특례기부금,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

\*\* 정치자금기부금, 고향사랑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능

<b>사례 1</b>	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?
<p>◇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100/110을, 10만 원 초과분은 15%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.</p> <p>◇ 10만 원 이하 = 10만 원 × 100/110 = 90,909원</p> <p>◇ 10만 원 초과 = 10만 원 × 15% = 15,000원</p> <p>◇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 = 90,909원 + 15,000원 = 105,909원</p> <p>☞ 위 근로자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105,909원입니다.</p>	

<b>사례 2</b>	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방헌금으로 400만 원, 대학교기부금으로 900만 원, 종친회에 3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?
<p>◇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15%, 1천만원 초과분은 30%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.</p> <p>◇ 특례기부금(국방헌금) 세액공제 = 400만 원 × 15% = 60만 원</p> <p>◇ 일반기부금(대학교) 세액공제 = (600만 원 × 15%) + (300만 원 × 30%) = 180만 원</p> <p>◇ 기부금 세액공제액 = 60만원 + 180만원 = 240만 원</p> <p>* 종친회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</p> <p>☞ 위 근로자의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40만 원입니다.</p>	

<b>사례 3</b>	총급여액 4천만 원(근로소득금액 2,875만 원)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기부금(평생교육시설 기부금)으로 9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 및 이월액은?
<p>◇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·일반기부금(2013년 이후)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.</p> <p>◇ 일반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= 862.5만 원(근로소득금액 2,875만 원 × 30%)</p> <p>◇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= 862.5만 원 × 15% = 1,293,750원</p> <p>◇ 기부금 이월액 = 9백만 원 - 862.5만 원 = 375,000원</p> <p>☞ 위 근로자의 일반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1,293,750원이며,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일반기부금 이월액은 375,000원입니다.</p>	

## 7. 월세액 세액공제

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(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)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**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,**

- 지급하는 월세액(연 750만 원 한도)의 15%(17%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
○ 공제율
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) : 15%
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초과자 제외) : 17%

<b>사례 1</b>	총급여 8천만 원 근로자가 기준시가 2억 원인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7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?
<p>◇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,                  ☞ 위 근로자의 <b>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없습니다.</b></p>	

<b>사례 2</b>	총급여 6천만 원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(기준시가 2억 원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?(주택 소유 요건 등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)
<p>◇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하며, 연간 월세액 한도액 750만 원 한도로 15%(총급여 5,500만 원 초과에서 7천만 원 이하자) 세액 공제</p> <p>◇ 공제대상 월세액 : 750만 원</p> <p>◇ 월세액 세액공제액 : 1,125,000 원(750만원 × 15%)</p> <p>☞ 위 근로자의 <b>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1,125,000 원</b> 입니다.</p>	

<b>사례 3</b>	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(기준시가 2억 원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?(주택 소유 요건 등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)
<p>◇ 연간 월세액 한도액 750만 원 한도로 17%(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자) 세액 공제</p> <p>◇ 공제대상 월세액 : 750만 원</p> <p>◇ 월세액 세액공제액 : 1,275,000원 (750만 원 × 17%)</p> <p>☞ 위 근로자의 <b>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1,275,000 원</b> 입니다.</p>	